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13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서삼석 · 문금주 · 윤준병
김원이 · 박용갑 · 조계원
조인철 · 김영진 · 박수현
정준호 · 박지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와 광주 · 전남의 상생협력과 공동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임.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과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협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절차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이전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지역과의 합의 등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등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전지역 활성화와 이주자 등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례사업의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해 이전

주변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며 국가산업단지 지정 특례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 규정을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 공항 이전이 이전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국가는 이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이전주변 지역 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지원만으로는 이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특례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과 별도로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그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규모,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철도·도로·항만시설·산업단지·신도시 조성 등의 인프라 건설
2.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등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이에 수반된 생활 편의시설의 조성
3. 이주자 등의 직업훈련·취업알선 및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국가와 이전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주자 등의 지원 및 이전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음피해 추가지원)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별도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 등의 보상 및 주민 소득사업 등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이전주변지역 지원,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지원사업 및 특례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이전 지역 지원) <u>이전사업</u>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5조(이전 지역 지원) ① 국가는 이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u>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특례사업(이하 “<u>특례사업</u>”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u>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지원만으로는 이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사업은 「<u>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9조제2항과 별도로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그 비용은

<신 설>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규모, 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전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철도·도로·항만시설·산업단지·신도시 조성 등의 인프라 건설

2.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등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이에 수반된 생활 편의시설의 조성

3. 이주자 등의 직업훈련·취업알선 및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국가와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주자 등의 지원 및 이전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제15조의2(소음피해 추가지원)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별도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생략)

<신설>

<신설>

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 등의 보상 및 주민 소득사업 등 이전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이전주변지역 지원,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지원사업 및 특례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

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

	<u>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 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u>
--	--